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

(2023.09.18. 개정)



목차

1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2장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

3장 후보자 등록

4장 투표 및 개표

5장 선거운동 및 징계

6장 당선

7장 재투표 및 재선거

8장 세칙 개정

부칙

1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1조 (적용 범위)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는 본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칙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총학생회 선거규약에 의거하여 수정 및 적용한다.)

2조 (선거권) 선거권은 인문대학 재학생으로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3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아래 해당 사항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 ①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한 본회의 재학생으로, 학업에 충실하며 학생자치활동에 열성을 갖고 통솔력이 있는 자.
- ② 인문대학 학생회의 경우, 4학기 이상 등록하여 임기 연도 3학년 이상의 학년에 적을 둔 품행방정한 자.
- ③ 학과 학생회의 경우,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임기 연도 2학년 이상의 학년에 적을 둔 행실이 바른 자.
- ④ 당해 연도 학생회원 중 후보 추천일이 시작되는 날 이전에 사퇴한 자.
 1. 후보 추천일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전까지 본교 인문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사퇴서를 제출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도 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연도 학생회장단과 학생회 구성원은 사퇴서를 본교 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출한다.
 4.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④항의 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퇴서 서면 제출은 불필요하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선거관리에 관여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⑥ 평점 2.0 이상인 자, 2개 학기 이상의 학사경고,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4조 (선거방법)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장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

5조 (구성)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선관위)의 구성은 인문대학 운영위원으로 한다.

- ① 인선관위 위원장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인선관위 위원장의 피위임자격은 학과 학생회장단 이상의 직선 대표자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 및 유고 시 위임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인문대학 학생회실은 인선관위의 사무실로 한다.

6조 (책임)

- ① 본회의 회원은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인문대학 학생회의 각 기구는 학생회 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감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7조 (구성 시기) 선거 공고 이전까지 인선관위의 구성을 발의한다.

8조 (업무 및 권한) 인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① 입후보자 자격심사
- ② 선거인 명부작성
 - 1. 선거인 명부는 선거 개시 전날 기준, 인문대학 재학생 명단으로 한다.
- ③ 선거관리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
- ④ 선거에 관련된 제반 홍보물 적법 판정
- ⑤ 규정에 벗어난 제반 홍보물에 대한 철거 및 압수
- ⑥ 선거 일정의 공고
- ⑦ 선거장 질서유지 및 감독
- ⑧ 재선거 및 재투표 여부 결정
- ⑨ 선거 및 당선인 유효 여부와 당선인 확정
- ⑩ 선거관리에 필요한 보조요원 선발
- ⑪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 ⑫ 투표장소 및 개표장소 결정
- ⑬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 ⑭ 후보자 자격 박탈 및 징계 결정

9조 (소집 및 개회)

- ① 인선관위 소집은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재적 인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② 인선관위는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10조 (의결)

- ① 일반 사항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8조 ④, ⑤, ⑧, ⑨, ⑭항 및 중요사안은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조 (선거일정의 공고) 인선관위는 선거 개시 7일 이전에 공고한다. (단, 보궐선거 및 재선거 일정은 인선관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3장 후보자 등록

12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2인 1조로 하며 인선관위에서 정하는 기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조 (등록 서류)

- ①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인선관위 소정 양식, #별첨자료1)
- ② 약력 및 입후보 소견서 1부 (인선관위 소정 양식, #별첨자료2)
- ③ 재학증명서 각 1통
- ④ 규약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추천회원의 자필 서명
- ⑤ 선거규약 이행 및 공정선거 서약서 1부 (인선관위 소정 양식, #별첨자료3)
- ⑥ 증명사진 각 1매

- ⑦ 성적증명서 각 1통
- ⑧ 후보자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도장 1과

14조 (추천인 서명)

- ①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은 일정 공고 이후 7일 이내로 진행한다.
- ② 후보자 추천 및 등록 마감 시간은 마지막 등록일의 18시이다.
 - 1. 인문대학 학생회의 경우, 전체 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2. 학과 학생회의 경우, 학과 소속 유권자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추천 기간에는 약력을 공개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선거운동도 금지한다.

15조 (입후보자 심사 및 등록공고)

- ① 인선관위는 등록 시간 마감 후 24시간 이내에 제3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 ② 입후보자는 제13조의 등록 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다.
- ③ 등록 서류 확인 및 최종 등록 결정을 진행하고, 등록 순서에 따라 기호를 부여한다.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선거운동본부에 이전 등록된 후보가 있는지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 ④ 최종 등록된 선거운동본부의 정·부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 1인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다. (참여자 중 1인이라도 불참 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조치한다.)
- ⑤ 탈락한 입후보자는 당해 연도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당해 연도 학생회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 ⑥ 후보자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지참한다. (선거기간 동안 사전에 확인된 도장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장 투표 및 개표

16조 (시간)

- ① 투표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 ②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치지 아니하면 하루 더 연장하고, 시간은 ①항과 동일하다. (18시 대기 인원까지 투표가 유효하다.) [투표율 = 총투표 인원 / (1, 2, 3학년 유권자 + 4학년 투표 인원)]
- ③ 투표 및 개표는 인선관위 위원장이 관리하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후보자와 참관인 1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7조 (참관인) 각 후보자는 투·개표장에 1인씩 입회시킬 수 있다. (단, 투·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①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인선관위와 상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참관인은 투표 종료까지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관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2. 특정 후보를 상징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 3. 기타 인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④ 위의 ①, ②, ③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선관위에서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부여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⑤ 참관인 도장은 후보자 등록 때 지참하였던 도장을 사용한다.

18조 (투표함)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으로 한다.

19조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 검인한 것으로 한다.

20조 (기표절차)

- ① 선거인은 신분증(학생증 및 모바일 학생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기표 전에 참관인이나 인선관위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훼손하였을 경우는 재교부한다.
- ③ 선거인이 신체적 사유로 인해 자신이 직접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이 지정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

21조 (무효표)

- ① 인선관위가 제작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투표용지에 인선관위나 참관인의 검인이 없는 것
- ③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 ④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 ⑤ 지정된 필기 및 투표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함에 해당 투표용지가 들어있지 않은 것
- ⑦ 인선관위 및 참관인의 참관 확인 용구 사용 흔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⑧ 기타는 인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5장 선거운동 및 징계

22조 (선거운동본부)

- ①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 ② 선본은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책 공약 등을 수립하고,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후, 각 후보자는 정·부 후보자 및 선본원으로 구성된 선본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인선관위 위원과 본회의 회원 중 피선거권을 얻지 못한 자는 선본원이 될 수 없다.
- ⑤ 선본원은 각기 다른 선본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⑥ 선본원 추가 명단은 매일 23:59까지 제출할 수 있고, 추가한 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이후부터 활동할 수 있다. (단, 선본원 추가 등록은 선거 12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
- ⑦ 선본은 자체의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본의 총괄적인 운영을 책임지며 선본을 대표하는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을 선출한다.
- ⑧ 선본은 선거 종료 즉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해산된다.

23조 (금지사항)

- 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금품 수수 행위

- ② 인선관위가 허가하지 않은 집단적인 유세 행위
- ③ 입후보자를 포함한 선본원의 폭력 행위
- ④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흑색선전, 유언비어 유포 등 기본선거 질서를 해하는 각종 폐습 행위
- ⑤ 위의 ①, ②, ③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 ⑥ ④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의성과 심각성을 인선관위가 판단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4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인선관위 위원
- ② 인문대학 및 각 학과 학생회 구성원 (단, ①, ②항의 경우 선거 개시 3일전 사퇴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③ 휴학생이나 본교 학부 재학생이 아닌 자
- ④ 위의 ①, ②, ③항에 해당하는 자가 선거 운동을 하였을 경우, 해당 후보에 경고 조치한다.

25조 (선거 운동)

- ① 선거운동은 사전 협의 때 협의한 부분 내에서 진행한다.
 - 1. 선거운동은 출사표 게시로 시작한다.
 - 2. 출사표는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되, 후보자의 증명사진, 약력, 공약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 ② 선거운동은 정해진 기간과 장소 내에서 9~18시까지 한다.
 - 1. 선거운동도구 중 배포물의 경우 18시가 넘어도 노출할 수 있다.
 - 2. 배포물을 제외한 선거운동도구가 18시 이후 노출되었을 경우 관련한 기타 사항은 인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 ③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사전 협의한 선거 홍보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인문대학 학생회실, 각 학과 학생회실(과방), 실습실을 포함한 학생자치공간의 출입을 일절 금지한다. (단, 인선관위가 납득 가능한 경우에는 일부 허용한다.)
- ⑤ 공고 후, 선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전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
- ⑥ ①~⑤항 중 하나라도 위반하였을 경우, 인선관위에서 의도성을 판단하여 징계 조치한다. (단, ⑤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선본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 ⑦ SNS와 관련된 내용은 사전 협의에서 조율한다.
- ⑧ 기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해선 인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26조 (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인선관위의 고유 권한이며, 징계받은 후보의 선본은 인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주의, 경고로 나뉘며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해당하고, 경고 3회 시에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 ③ 선거시행세칙에 자격 박탈을 명시한 경우와 경고 조치 후 똑같은 행위가 해당 후보로부터 반복되었을 경우 인선관위에서 의도성을 파악하여 자격 박탈한다.
- ④ 선거에 문제가 되나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에 관하여 고의성 여부, 올바른 선거문화에 대한 위배성 여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 ⑤ 자격 박탈된 후보는 당해 연도의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당해 연도 학생회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 ⑥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인선관위의 논의에 따라 징계 조치한다.

27조 (징계의 통보)

- ① 인선관위는 징계 사실을 적발한 후 12시간 이내에 해당 후보에게 심사·통보해야 한다.
- ② '주의'는 즉시 해당 후보에게 구두로 통보하며, '경고'는 즉시 해당 후보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해당 후보가 주의를 받은 후에도 이를 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경고로 변경 조치한다. (다만, 인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즉각 시정 혹은 1~4시간 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선전물에 관한 동일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한하여 선전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견되더라도 동일한 사안으로 처리하여 징계한다. (선거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⑤ 경고를 받은 선본은 인선관위의 징계 공고 후 12시간 이내에 인선관위의 허가에 따라 '(선본명) 선거운동본부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공개 사과문을 지정된 게시판에 대자보(A0) 1장 이상의 크기로 24시간 이상 게시한다.
- ⑥ 징계받은 선본의 선본장은 인선관위의 통보 후 12시간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1. 인선관위는 이의제기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재심사하고 이의제기한 선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2. 인선관위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통보 후 12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한다.
 - 3. 단, 선거일 3일 전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인선관위의 결정에 의거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8조 (징계의 의결)

- ① 징계의 의결은 인선관위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징계 조치에 대한 선본의 이의제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받아들여지면 인선관위는 이 사실을 재공고해야 한다. (단, 한 번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6장 당선

29조 (당선)

- ① 전체 유권자(4학년의 경우 투표한 자)의 과반수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 판정 시는 그 기준을 실 투표수 대비 유효 득표수로 한다.)
- ② 동일한 선거에서 3개 이상의 선본이 존재하는 경우 과반수 투표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입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단, 연장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입후보 선본은 모두 탈락하며 다음 연도에 보궐선거를 진행한다. (탈락한 선본은 재등록 할 수 없다.)

30조 (당선 공고)

-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인선관위 위원장은 이를 3시간 이내에 공고하고, 공고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는다.
- ②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인선관위는 즉시 소집되어 제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의결은 인선관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24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시에는 당선 확정을 공고한다.
- ④ 이의제기 기간에도 징계는 누적되며, 당선 확정 공고 직전까지 경고가 3회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31조 (이의신청)

- ①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표 결과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1. 후보자에 의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당해 연도 인선관위 채널에 게시하고 서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일반 학우에 의한 이의제기는 서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선관위 위원장에게 알리고, 이의제기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선관위는 이를 인문대학 커뮤니티 및 인문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다.
- ② ①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청문회를 진행한다.
 - 1. 청문회에는 인선관위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해당 선본의 선본장, 이의제기를 한 자의 참석 하에 실시한다.
 - 2. 청문회 이후 이의제기 내용이 인정되면 인선관위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거하여 당선을 취소시킬 수 있다.
 - 3. 청문회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인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7장 재투표 및 재선거

32조 (재투표) 득표수는 유효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① 단선의 경우, 한 선본이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경선의 경우, 1차 투표에서 1, 2위의 표차가 무효표보다 적으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재투표는 1차 투표 종료 후 7일 이내에 실시한다. (시기는 인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④ 재투표는 과반수 투표의 최다득표자로 당선을 확정한다.
- ⑤ 재투표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징계는 누적된다.

33조 (재선거)

-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7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 1.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된 선본이 없을 경우
 - 2. 선본 자격 박탈로 인해 등록된 선본이 없을 경우
- ② 재선거의 공고는 그다음 주 월요일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인선관위의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1차 투표 이후 연장 투표를 진행하였음에도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34조 (결선투표) 결선투표는 1차 투표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실시하며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 ① 결선투표는 세 단위 이상의 후보자를 두고 투표를 진행하였을 때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만 시행하며, 최다득표자와 차득표자를 두고 시행한다.
- ② 결선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투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연장 투표를 실시한다. (단, 이후 득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당선은 무효된다.)
- ④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징계는 누적된다.

35조 (보궐선거) 학생회장단의 궐위 시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인문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학과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하거나 불신임 결의를 받아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경우, 잔임 기간이 120일 이상인 경우, 그날로부터 20일(방학은 제

외)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임 기간이 120일 이하일 경우에는 인운위 내부에서 호선한다.)

- ② 재선거 실시 후에도 등록자가 없으면 그다음 해 3월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6조 (기타)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안은 인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8장 세칙 개정

37조 (효력) 본 규약은 2010년 10월 29일 이후 인문대학 모든 학생회 선거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8조 (발의 및 의결)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칙을 개정하는 조건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39조 (공포)

- ①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은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②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은 폐지한다.

부칙

- 1. (발행) 본 세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2. (시행) 본 세칙은 2017년 11월 8일에 공포한다.

부칙

- 1. (발행) 본 세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2. (시행) 본 세칙은 2018년 11월 1일에 공포한다.

부칙

- 1. (발행) 본 세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2. (시행) 본 세칙은 2019년 11월 4일에 공포한다.

부칙

- 1. (발행) 본 세칙은 공포와 함께 그 효력이 발하고 이전의 모든 인문대학 선거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2. (시행) 본 세칙은 2023년 9월 18일에 공포한다.